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안)

1. 추진배경

-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방송과 통신의 낡은 규제 틀을 과감히 개선,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틀 마련
 - 방송사업의 각종 소유·점영 규제를 완화하고, 유료방송의 프로그램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시, 간접·가상광고제 도입 등 방송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 저소득층 요금 감면, 초당 과금제 도입 등 이동통신 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재판매제도 도입 기반 등 마련
- '10년부터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경쟁과 국민이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역점
 - 방통위는 '경쟁력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미디어산업 육성'과 '미래 네트워크 선도'를 '방송통신 2010 핵심과제'의 주요한 아젠다로 선정
 - 최근 스마트폰 등 무선인터넷 기반의 융합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이용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여론을 반영

〈 주요 언론 보도내용 〉

- ▶ 스마트폰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고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규제 개선 필요
- ▶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 위주의 IT정책에 대한 재정비 필요

-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통신·인터넷 등 소관분야 규제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 계획을 새롭게 추진

□ “새로운 10년을 선도하는 방송통신 2010 핵심과제” 발표 (‘09.12.21)

-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인터넷 광고시장 육성, 녹색 융합서비스 및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제도 개선 사항 포함

※ 방송통신 2010 핵심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09.11.23~12.4)

- 일반국민(1,000명)은 요금 등 방송통신서비스 정책(44%), 사이버안전(25%)
- 방송통신전문가(100명)는 미디어산업·무선인터넷 활성화, 차세대 방송통신산업 육성, 방송통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요구

□ “2010년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 개최 (‘10.1.21)

- 방통위의 ‘10년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방향 발표

□ 스마트폰 등 새로운 산업성장 발전전략 발표 (‘10.4월~)

-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미디어산업 발전전략” 발표 (4.8)
 - 무선인터넷 활성화, 공정거래 조성과 상생협력 구축 등 제도개선 포함
-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4.21)

□ “방송통신 2010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10.1월~)

- ‘녹색 융합서비스 민·관 합동추진협의회’ 출범 (1차 1.28 / 2차 4.27)
- ‘모바일 광고정책 포럼’ 출범 (3.29)
- ‘방송편성평가정책협의회’ 개최 (1차 4.27 / 2차 5.27)
-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출범 (4.28)
-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 구성·운영 (1차 4.28 / 2차 5.6)

□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신규서비스 활성화 규제개선 중점논의 (‘10.3월~)

- 방통위 산하 『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개최 (1차 3.23 / 2차 5.7)

※ 방통위, ‘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27개 확정(‘10.1.27)

□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민간업계 의견 수렴 (‘10.4.22~5.4)

-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융합형 新비즈니스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계획 마련

〈 규제개선 추진방향 〉

추진대상	○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에 대한 직·간접 규제
추진목표	① 신 기술·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②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 ③ 이용자의 편익 증대 ④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추진수단	○ 관련 법령, 고시, 지침 등 제·개정 ○ 약관변경 등 사업자의 자발적 제도개선 이행
추진평가	○ 과제 개선을 위한 사전준비, 진행상황, 사후평가 등 실시

- IT기술과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녹색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10. 하반기)

- 의료, 교통, 교육, 금융, 유통, u-City 등 다양한 녹색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공공정보 활용, 인터넷 지도서비스 이용 등 인터넷 응용서비스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

※ ‘녹색 융합서비스 민·관 합동추진협의회’(‘10.1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10.4월) 운영

- 인·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에 대한 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조사, 사업자 민원사무의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 추진 (‘10. 하반기)

- 민원사무에 대한 운용현황을 조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절차 등 제도 개선 추진
- 사업자가 인·허가 등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서도 마련

※ 방통위 소관 법률상의 사업자 민원사무 현황(출처 : 방통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10.1월)
- 허가(17), 인가(10), 승인(25), 등록(9), 신고(42), 인증·시험(6), 기타 검정·검사·교부 등(21) 총 130건

- 사업자, 유관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민공개 제안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
 - 방통위 및 산하기관 웹사이트 내 ‘대국민 공개제안 창구’를 개설 (‘10. 6월 중)
 - 신규과제는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추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

4 추진과제

가. 개요

-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현안 중심의 과제를 선정 (총 18건)

▶ 유형별 추진과제

구 분	신 기술· 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업 자율성 제고	이용자 편익 증대	공정경쟁 환경
규제개선유형(건)	5	6	3	4

▶ 분야별 추진과제

구 분	방송	통신(전파 포함)	인터넷
규제개선 분야(건)	7	6	5

▶ 수단별 추진과제

구 분	법	시행령	고시·지침	기타
규제개선 수단(건)	5	7	7	4

※ ‘고시·지침’에 시청점유율 조사 등 법령 개정과 중복 건수 포함

※ ‘기타’는 재허가조건, 이용약관 인가·신고, 사업자협회 자체 가이드라인 등

나. 추진내용

① 신 기술·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 (모바일 위치정보 이용규제 개선) 지도 서비스, 주변정보 서비스 등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없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인 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를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기록·보존 의무 면제 등을 추진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KT, SKT, 삼성전자, 서울시, NHN, 다음, 구글코리아 등 70개사)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 생활정보, 텔레매틱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SK네트웍스, 포스데이터, 현대자동차 등 151개사)

-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행태를 분석하여 광고에 활용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개인 행태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행태정보 : 온라인상에서의 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내력 등 이용자의 행위에 관한 정보

- (사물지능통신 지원법 제정)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에 따른 사업자의 투자 동기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 마련 (「(가칭)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및 사물정보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사물지능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등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관련 사항 등 법률 규제 사항을 포함

- **(TV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非 홈쇼핑방송사업자에게도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이용한 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허용(「보조적 데이터방송에 관한 지침」 개정)

※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 채널(KBS1, 공공채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제한

- 향후 시청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방안, 간접광고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 검토

-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IPTV 등 융합서비스를 통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추진 필요

-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방이 수반되지 않는 상담(예.신경정신과), 당뇨, 고혈압 등 일반 만성질환 등을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 의료법 개정안(국회 제출, '10.4.8) : 응급환자나 재진환자 중 도서·벽지 환자, 수용자 등에 한하여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②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

- **(지상파방송시간 제한 규제 완화)** 다매체·다채널 방송매체 환경에서 지상파TV에만 부과되고 있는 방송시간 규제 개선 (「지상파방송사의 허가·재허가 조건」 변경)

- 시청자 권익증진 및 방송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방송시간 제한 (06:00~익일 01:00) 규제 완화

-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 현행 시장매출액 기준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위성DMB, WiBro, 지상파LBS 등 융합서비스에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전파법」 시행령 개정)

-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단위 주파수 가격을 부과하는 방안 등 검토

-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심사기준 등 개선)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허가·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허가·재허가 심사 기준, 절차 등 개선 (「방송사업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관련 방송법 개정안 국회제출 ('10. 3월)

- 방송법에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의 허가·재허가 심사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
- 매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심사 항목과 배점 등을 마련하며, 심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방법, 허가·재허가 신청인의 의견청취 방법 등을 고시에 규정

- (방송광고 운용 규제 개선) 지상파방송의 토막광고, SO·위성방송·DMB의 토막광고·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 운용 규제 완화 (「방송법」 시행령 개정)

- 법령에 규정된 광고시간 내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상의 건수 규제 삭제 검토

※ 현행 중간광고, 토막광고 규제 현황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2항)

구 분	지상파 TV	지상파 라디오	종합유선 및 위성	DMB
중간광고	해당없음		회 1 2 3 4 5 6 분 45 60 90 120 150 180 매회당 60초 이내 3건	
토막광고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90초 이내, 4건	매시간 4회 이내 매회당 80초 이내, 4건 (매시간 5분 이내)	매시간 2회 이내 매회당 100초 이내, 5건	매시간 4회 이내 매회당 100초 이내, 5건 (매시간 3분20초 이내)

- (전파사용료 부과기준 등 개선) 위성휴대통신(GMPCS)별로 부과되고 있는 부과기준을 가입자 수 기준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사업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 등 추진 (「전파법」 시행령 개정)

※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 위성을 이용한 휴대통신으로 산간, 도서오지, 사막, 바다 등 통신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형에서 통신 가능 (국내에는 KT,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코리아오브컴, AP시스템이 서비스 제공)

- **(팜토셀(초소형 기지국) 신고·검사제도 개선)** 소출력 옥내 중계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팜토셀(초소형 기지국)을 非 신고대상 무선기기로 분류, 신고·검사 면제 등 규제 완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에 관한 고시」 개정)
- 팜토셀은 옥내 지상·지하의 30~50m거리를 서비스하기 위한 소출력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으로 일반 통신사용 소출력 중계기와 동일하게 신고·검사 면제 추진

③ 이용자의 편익 증대

- **(무선인터넷 요금 개선)**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확대하고,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로 다양한 무선인터넷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 출시 유도**

※ 데이터요금제 도입현황('10.6월 현재)

구 분	KT	SKT	LG텔레콤
테더링 요금제	도입	도입	도입
OPMD(One Person Multi Device) 요금제	도입	도입예정	검토중
데이터이월 요금제	도입	검토중	검토중

* 테더링 요금제 : 별도의 모뎀없이 스마트폰을 노트북, PC 등에 연결하여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무료데이터용량 초과시 추가요금 부담)

* OPMD 요금제 : 이동전화의 데이터요금으로 노트북, PMP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무료데이터용량 범위 내에서 활용)

- **(본인확인제도 개선)** 악성 댓글 피해 방지 등 법제정 취지, 규제에 의한 산업계 피해, 자율규제 성숙도 등을 고려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개선방안을 모색
- '인터넷규제 개선 추진반'('10.4~12)을 통해 정부 및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 (제한 외국인의 유료방송 가입조건 등 개선) 외국인이 케이블TV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케이블TV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 외국인의 케이블TV 가입은 실명 확인 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가입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가 외국인에 대해 과다한 장비보증금, 요금 선납 등을 요구

-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 가입 조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체 SO가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34개사 → 96개 전체사업자로 확대)

④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재판매(MVNO)제도 시행령 등 마련) 재판매(MVNO)제도 도입에 따른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등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 시행령에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한 도매제공사업자 및 의무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도매제공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산정 기준은 고시로 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주요내용('10.3.22 공포, 9.23 시행)

- 통신설비가 없는 신규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이 가능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를 지정하되 3년 후 일몰
- 분쟁발생시 재정신청 가능, 금지행위에 해당 시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마련)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시청점유율 30% 제한규정(방송법 제69조의2)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및 고시 제정 필요 (「방송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 시청점유율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 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구체적 필요 조치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 **(외주제작 제도 개선)** 역량있는 외주제작사 육성을 위해 방송법의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를 보완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 지상파방송사에 외주제작 공급기준 신고 의무화, 외주제작물 인정 기준 마련, 방송분쟁조정 심의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
 - ※ 관련 방송법 개정안 문방위 소위 회부 ('09.12.16)
- **(이통사-CP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이통사-CP간 수익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수익배분의 부당한 거부·지연, 계약내용과 다른 수익배분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
 - ※ 게임, 음악 등 모바일 콘텐츠 장르별 특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이통사 기여분이 반영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09.6월)
 - ※ 모바일콘텐츠 거래에서의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제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0.3월)

5

향후 추진일정

- 추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공개 제안 ('10. 6월~)
-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의 ('10. 6월~)
- 관련 법령, 고시 등 제·개정 추진 ('10. 6월~)

(붙임)

분야별 규제개선 추진 과제

과제 내용	개정사항	완료 예정일 (논의개시시점)	소관 부서
□ 방송 분야(7개)			
<지상파방송시간 제한 규제 완화> ○ (현행) 지상파방송사의 허가·재허가 조건으로 방송시간을 규정(0600~익일 01:00) ○ (개선) 시청자 권익 증진 및 방송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방송시간 제한 규제 완화	○ 재허가 조건	‘10. 하반기	방송 정책국
<TV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 (현행) 홈쇼핑PP 이외의 방송사업자는 본방송과 관계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등 금지 ○ (개선) 非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TV 전자상거래 허용과 함께 시청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간접광고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 검토	○ 보조적데이터 방송에 관한 지침	‘10. 하반기	융합 정책관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마련> ○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에 따른 시청점유율 30% 제한규정의 원활한 시행(‘10.8.1)을 위한 대통령령 및 고시 제정 -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을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 - 시청점유율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필요조치 사항 등을 시행령에 규정	○ 방송법 시행령, 고시	‘10. 8~12월	방송 정책국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심사기준 등 개선> ○ (현행)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매체에 관계없이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등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 ○ (개선) 방송법에 허가·재허가 심사기준, 절차 등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고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 제정	○ 방송법, 고시	‘10. 12월	방송 정책국
<외주제작 제도 개선> ○ (현행) 방송법 제72조의 ‘외주제작’ 정의가 모호하며, 지상파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간 프로그램 제작 및 수익 배분에서 불공정 논란 지속 ○ (개선) 지상파방송사에 외주제작 공급기준 신고 의무화 및 인정기준 마련, 방송분쟁조정 심의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등 외주제작 의무 편성제도를 보완	○ 방송법, 시행령, 고시	(‘10. 상반기~)	방송진흥 기획관
<방송광고 운용 규제 개선> ○ (현행) 한 회에 편성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TV·라디오)의 토막광고, SO의 토막광고·중간광고의 건수와 시간을 동시에 규제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2항) ○ (개선) 허용된 광고시간 내 짧은 틈새광고도 가능하도록 건수 규제 완화	○ 방송법 시행령	‘10. 하반기	방송진흥 기획관

과제 내용	개정사항	완료 예정일 (논의개시시점)	소관 부서
<제한 외국인의 유료방송 가입조건 등 개선> ○(현행) 외국인의 케이블TV 가입은 실명 확인 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가입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가 외국인에 대해 과도한 장비보증금, 요금 선납 등을 요구 ○(개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연계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케이블TV사업자의 약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외국인의 가입불편을 개선	○지침 마련(협회)	‘10. 6월	방송 정책국
□ 통신(전파 포함) 분야(6개)			
<재판매(MVNO)제도 시행령 등 마련> ○(현행)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통신망을 임차하여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판매(MVNO)제도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0.3.22)) ○(개선) MVNO 도입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 지정 기준 등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고시	‘10. 9월	통신 정책국
<무선인터넷 요금 개선> ○(현행) 스마트폰, 노트북 등 각 단말기별로 가입비, 이용료 등 요금을 부담 ○(개선)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확대하고,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로 다양한 무선 인터넷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 출시 유도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신고	‘10. 하반기	통신 정책국
<이통사-CP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현행) 이통사-CP간 수익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09.6월 제정)의 실효성 제고 필요 ○(개선) 시행령에 이통사와 모바일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수익배분의 부당한 거부·지연, 계약내용과 다른 수익배분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의 세부유형 구체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0. 9월	이용자 보호국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 ○(현행)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는 시장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융합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의 시장매출 예측이 곤란 ○(개선)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단위 주파수 가격을 부과하는 방안 등 검토	○전파법시행령	(‘10. 4월~)	전파 기획관
<전파사용료 부과기준 등 개선> ○(현행)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의 비용충당 및 전파진흥을 위해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 ○(개선) 위성휴대통신(GMPCS) 사업자별로 달리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가입자 수 기준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 사업자에 사용료 감면 등 추진	○전파법시행령	‘10. 하반기	전파 기획관

과제 내용	개정사항	완료 예정일 (논의개시시점)	소관 부서
<펌토셀(초소형 기지국) 신고·검사제도 개선> ○ (현행) 일반 소출력 중계기는 신고·검사가 면제되고 있으나, 펌토셀 기지국은 소출력 무선기기임에도 일반기지국과 동일한 신고,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개선) 일반 소출력 중계기와 형평성 및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펌토셀 기지국도 비신고 대상 무선기기로 분류하여 신고·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에 관한 고시	‘10. 9월	전파 기획관
□ 인터넷 분야(5개)			
<모바일 위치정보 이용규제 개선> ○ (현행)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의 허가(신고)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기록의 보존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개선)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자에 대해 진입 및 보호조치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 12월	네트워크 정책국
<본인확인제도 개선> ○ (현행)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장치 마련 의무 부과 ○ (개선)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외국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 개선방안 마련	(‘10. 4월~)	네트워크 정책국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 (현행) 온라인상에서 행태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성향에 맞는 광고를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침해 우려로 산업적 활용이 어려움 ○ (개선)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행태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지침 마련	‘10. 9월	네트워크 정책국
<사물지능통신 지원법 제정> ○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에 따른 융합형 신규서비스 출현에 대비하여 규제 환경을 정비하고 사업자의 투자 동기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 마련 - (가칭)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및 사물정보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법(안) 마련	‘10. 12월	네트워크 정책국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 (현행)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제34조)에서 응급환자 및 재진환자 중 도서·벽지에 있는 환자, 수용자, 거동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계획 ○ (개선) IPTV 등 융합서비스를 통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방이 수반되지 않는 상담(예. 신경정신과), 당뇨, 고혈압 등 일반 만성질환 등을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	○ 의료법	(‘10. 4월~)	보건복지부 (주관부처) · 융합정책관